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
----------	-----

제출년월 : 2024년 10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분을 개선·보완하여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3개월에서
전입 즉시로 변경(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나.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를 위한 조문 정비(안 제8조제1항~제4항)

다.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조문 신설

- 지급중지 및 환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등 대상자 관리
체계화(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774,000천원 추가 반영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에게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급(월 3만원)
- 성북구 거주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약 2,150명

- 3만원*2,150명*12회=774,000천원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4.8.22. ~ 2024.9.11.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별첨

6)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라.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4조(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 참여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 예우
2. 보훈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3. 보훈 관련 기념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수여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교육 및 전적지 순례
3. 호국·보훈의 달 참배유족 수송지원 사업
4.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구청장이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로금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그 밖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문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등 협조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문금은 기념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④ 그 밖의 지급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

한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수당과 제10조에 따른 위문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및 위문금을 받거나 관계 보훈 법령에 따라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판명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당 및 위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및 위문금을 받거나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판명될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중지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2조(지급 대상의 관리 등) 구청장은 수당, 위로금 및 위문금의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협조 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

보훈 대상자	성 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성북구 전입일자	
예금 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 유의사항 : 호국지킴이,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불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10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성북구 전입일	없 음
		년 월 일	

1.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망자	성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대상자와 관계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서 1부 2.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1.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에게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급(월3만원)
시행을 위해 제6조의2 제1항 단서조항 삭제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성북구 거주 서울시 보훈 수당 받는 자: 약 2,150명
- 3만원*2,150명*12회=774,000천원 소요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						
	소계(a)						
구분 세출	○보훈예우수당	774,000	774,000	774,000	774,000	774,000	
	소계(b)	774,000	774,000	774,000	774,000	774,000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시비							
구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774,000	774,000	774,000	774,000	774,000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774,000	774,000	774,000	774,000	774,000	

5. 덧붙이는 의견

- 2025.1.1. 시행 예정

6. 작성자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 김도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5년도 예상 증액분: 774,000천원

- 서울시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보훈예우수당
- 2024.1.~6. 월 평균 인원: 2,114명
- 전입, 전출, 사망, 신규 유입 인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약 2,150명 추산
- 매월 3만원*2,150명*12회 = 연간 774,000천원 소요 예상됨.

2. 상세내역

(단위:천원)

회계연도	2024년도	2025년도(예상)
보훈예우수당(기준)	50,000원*2,150명*12회=1,290,000	70,000원*2,150명*12회=1,806,000
보훈예우수당(신규)	-	30,000원*2,150명*12회=774,000
합계	1,290,000	2,580,000 (1,290,000↑)

※ 기존 보훈예우수당: 5→7만원으로 인상 예정(25.1.1.~)